2019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9년 6월 20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지원 위원

- 4. 결석위원 없 음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양 석 준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김 현 기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1호 -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체계는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고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점검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가계 및 기업의 신용위험을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개발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음.

이어서 6월 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다수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하였으며, Growth-at-Risk를 통해 금융취약성을 평가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고서 개황에 담긴 금융안정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낙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보다 강조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5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큰 폭 유출 등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등 일부 지표의 움직임이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지표들의 추이를 면 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과 관련하여, 향후 기업의 경영상황에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여건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조정 등 국내 요인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최근 1 ~2년 동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과 관련하여, 민간신용/명목GDP 갭 지표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 지표의 유용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1/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매우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보증부 대출을 제외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의 국내 경기 및 자영업 업황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를 일률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지난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할 경우 그렇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신용스프레드 축소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부채의 만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조달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수 있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지표도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주택가격 변동과 함께 미입주·미분양 물량 등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의 변화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기관이 보유한 CLO의 대부분이 선순위 또는 A 등급 메자닌(mezzanine)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동 채권의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에 비해 높은 것은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해당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 유의할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현안 분석 중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복원력 점검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테스트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한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충격을 설정할 때 사용한 HaR(House prices-at-Risk) 추정 시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갭 대신 가계신용/명목GDP 비율 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경영상황 변화에 따른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점검과 관련하여, 수출·내수 기업간 차이 및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보증부 가계대출시장의 현황 및 잠재리스크와 관련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보증 확대는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적 보증 확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보증기관의 건전성 위주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거시적 측면에서 보증부 가계대출의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안)(생략)